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안)

2012. 8



❷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 관리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지청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 수립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O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제44조
- ※ 참고자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2.3월, 행정안전부)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서 자체 운영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개항을 포함

시행령 제25조 규정사항	우리청 방침(안) 내용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
2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5조(설치현황)
3항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6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항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제7조(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5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밥법 및 장소	제8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6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항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	제10조(기술적·관리적 조치) 제11조(물리적 조치)
8항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제정 2012. 8. 1.

제1장 총 칙

- 제1조(방침목적) 이 방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및 고양고용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및 고양고용센터의 청사 내·외부, 주차장 등에 설치된 자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업무특성상 만약의 경우 발생 가능 한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5조(설치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녹화장치가 장소 2개소(센터 4층, 경비실)를 설치 운영하며, 개별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Cam1(센터 1층)	센터 정문
		Cam2(센터 1층)	민원인 컴퓨터&대기실
		Cam3(센터 1층)	수급자격 팀
		Cam4(센터 1층)	탕비실
		Cam5(센터 1층)	센터 후문, 취업지원팀
		Cam6(센터 2층)	취업성공패키지 개별상담실
	16	Cam7(센터 2층)	출입문, 취업성공패키지 팀
고양고용센터		Cam8(센터 2층)	직업진로 팀
4층		Cam9(센터 3층)	출입문
		Cam10(센터 3층)	민원인 의자, 대기실
		Cam11(센터 3층)	여직원휴게실 입구, 대기실
		Cam12(센터 4층)	출입문, 엘리베이터
		Cam13(센터 4층)	4층 전반
		Cam14(센터 5층)	출입문, 엘리베이터
		Cam15(센터 5층)	대강당
		Cam16(센터 5층)	5층 전반
고양고용센터	0	Cam1~4(지하주차장2층)	지하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경비실	9	Cam5~9(지하주차장1층)	지하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제6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기획총괄과	과장	조용진	031-920-3977
관리담당자	기획총괄과	실무관	장성권	031-920-3905

제7조(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붙임1참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20일 ※영상정보 용량에 따라 보관기간 전후 자동 삭제	센터(4층, 경비실)

제3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에 대한 조치

- 제8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영상정보 확인을 원하는 자는 관리 담당자에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열람 청구서와 신분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할 수 있다. ※붙임2참조
-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44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제4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4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제10조(기술적·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 30조(비밀번호 관리)를 준용하여 접근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 제11조(물리적 조치) 출입구 시건이 가능한 구역에 영상정보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무단접근을 차단한다.

제5장 그 밖에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기타) 이 운영방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개별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 이 방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8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이용 · 제공 근거	이용 · 제공 형태	기간
						요구자	_ ,	"	
1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붙임 2]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호	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차	와의 관	계			
	주 소								
	성 명			전 호) 번 호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			·			
	주 소								
청구내용 (구체 적 으 로 요청하지 않 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 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2	2.01.01	18:30 ~	2012.01.	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근토	르개선지	도1과 나	I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 합니다.	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대	따라 위	와 같이	개인영심	상정보의	존재 확	인, 열람을 청구	구 구
		년	월		일				
					Ş	성구인		(서명 또는 인	<u>l</u>)
○ ○ ○ ○ 귀하									
담당자의 청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 · · · · · · · · · · · · · ·									